

([]배출시설, []방지시설) 자체개선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

허가(신고)번호 제 호

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휴대번호
	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)	
	업종 (주 생산품)	

배출시설(방지시설) 부적정운영(예정)일							
배출시설(방지시설) 변경 완료일 또는 개 선 완 료 일							
부적정 운영내용	시설명	굴뚝번호		규 격		수 량	[] 결함내용 [] 고 장
오염물질 배출 예 상 능 도	항 목						
	농 도						
예상평균배출가스량				m ³ /hr	일일가동 예상시간		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(방지시설)에 대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110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 · 지방환경청장 ·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· 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1.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민원실

유역환경청·지방환경청·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·도
(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)